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19 선고 2024가단3464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2024. 10. 29.

판결 선고2024. 11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신정민

별지